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8일, 박정하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사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9.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하 의원)

현행법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도핑이라 정의하고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핑기술이 발전하면서 도핑행위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은 도핑행위를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등 선수를 지원하는 인력의 금지약물 거래·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를 도핑 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 강화를 위한 금지약물 사용’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하여 비고의적 도핑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 선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나 수집·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도핑’을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규정을 도입하며, 이에 맞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
- 또한, 개정안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 수행자에게 업무상 자료 누설 등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안 제48조제5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등

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1. ~ 12. (생 략)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 2. (생 략)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생 략)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생 략)

② (생 략)

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1. ~ 12. (현행과 같음)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도핑 결과의 관리-----

4. (현행과 같음)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u>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u> 제48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u> 6.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도핑’을 정의하고, 도핑 방지 및 도핑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도핑’의 정의가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상 금지되는 행위와 괴리가 있고, 약물의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자료 수집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도핑’을 재정의하고, ② ‘치료목적사용면책’ 정

의 규정을 도입하며, ③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④ 도핑방지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 수행자에게 업무상 자료 누설 등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① ‘도핑’ 재정의(안 제2조제10호)와 관련하여, ‘도핑’의 범위를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 목적, ㉡ 행위, ㉢ 금지기준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문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핑의 사각지대 방지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현행법상 ‘도핑’은 ㉠ ‘운동능력 강화’ 목적, ㉡ ‘금지목록’, 즉,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 ‘성분’이 아닌 ‘약물’ 기준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또한,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정한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2조·제13조,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9조, 「경륜·경정 도핑방지규정」 제5조에서도 ‘도핑’이 ‘성분’이 아닌 ‘약물’ 기준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그런데, 「세계도핑방지규약」상 ‘도핑’은 ㉠ 목적을 불문하고, ㉡ 금지성분·금지방법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 시도·보유·부정거래(판매·운반·분배 등)·부정거래 시도·공모·공모 시도, 시료 채취 회피·거부·불응, 도핑관리과정 조작·조작 시도, 관련 제보 제지·보복 등

11가지의 금지행위를 포괄하며, ㉔ ‘약물’이 아닌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인바,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㉔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안 제2조제10호의2)와 관련하여, ‘치료 목적의 금지약물 복용 또는 방법의 예외적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규약」상 ‘치료목적사용면책(TUEs)’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 규정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선수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및 비고의적 도핑 위반 예방 등의 측면에서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체계에 맞춰 수정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안 제35조제1항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내용을 타 개정규정 등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위원을 ‘이사’로 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에 ‘이사회’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바, 사업 및 운영 관련 명확성 제고, 법체계 정비 및 입법미비 보완 등의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인 스포츠윤

리센터의 경우 정관 기재 사항(이사회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경우에도 정관 기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